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6년 3월 3일

나.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다. 찬 성 자: 김낙관 · 김민성 · 김영태 · 박세채 ·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정지원 · 허민근 의원(12인)

라. 회부일자: 2026년 3월 4일

마. 상정일자: 2026년 3월 12일
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김 정 도 의원

나. 제안이유

-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존의 복지관 · 체육관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시설 유형을 포괄하고, 각 시설의 운영 기준과 기능을 세분화하며, 위탁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음. 장애인의 근로의욕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근거 명시(안 제6조)
- 위탁관리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근거 명확화
(안 제3장~제4장)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기능 명시(안 제5장)
- 장애인 복지시설 13개소 표기(안 별표 1)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8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0조
- 기 타: 조례안 예고(2026. 3.4. ~ 3.10.) 결과 의견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조례안은

-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존의 복지관·체육관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시설 유형을 포괄하고, 각 시설의 운영 기준과 기능을 세분화하여, 위탁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미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의 근로의욕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수용과 보호’에서 ‘자율과 사회 참여’로 변화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이전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가 일부 시설의 운영·관리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 이번 개정을 통해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등 시설 유형별 기능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각 시설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시행 이후 시설별로 규정된 기능들이 실제 현장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 지침을 면밀히 정비해야 할 것임.

- 특히,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기준과 시설별 정원 관리가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병행되어야 하며,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생 략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